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경기도 정책방향 모색

정 혜 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1. 들어가며
2. 아동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3. 아동 놀이지원 정책 현황
4. 시사점 및 경기도 향후과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슈분석」제218호(21-32)

발행인 정정옥

발행일 2021년 12월 22일

발행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2층
Tel. 031)220-3900 Fax. 031)220-3994

인 쇄 디자인봄 031)236-3883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음.

※「이슈분석」은 여성가족 분야 정책이슈와 주요 통계·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 발간되며, 재단 홈페이지(www.gwff.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메일링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20-3914)

요 약

- 한국 아동의 행복감은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 참여한 35개국 중 31위이며, 경기도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지수(CWBI)는 17개 시도 중 10위로 낮은 수준임.
 -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8.41점이며, 대인관계 만족도의 순위는 35개국 중 14위로 비교적 높았지만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31위, 학습 만족도 25위, 안전한 환경 만족도 26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 28위로 나타남(이봉주, 2021). 경기도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CWBI)는 2012년 9위, 2013년 7위, 2015년 9위, 2017년 7위에서 2019년 10위로 나타남.
- 아동(만9-17세)의 약 65%는 시간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학업과 연관된 활동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만9-17세)이 시간부족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학교, 친구관계 및 학교 밖 활동, 학원 또는 과외수업, 자기학습 순으로 나타남. 아동이 평일에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활동은 학원이 61.0%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식사 및 간식(45.7%), 집에서 혼자 공부(44.3%), TV/동영상 보는 시간(43.7%) 순으로 나타남. 주말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활동으로는 TV/동영상 시청이 58.6%로 가장 많음.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는 지난 약 5년간 2차례에 걸쳐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하였고, 경기도는 최근 제1차 경기도아동정책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함.
 - 경기도는 놀이 활동가 양성 및 놀 권리 인식개선 교육, 지역사회 놀이혁신 심포지움 개최 등의 사업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경기도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놀이위원회 구성, 놀 권리 인식개선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요구에 기반 한 놀이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단위의 아동 놀이 환경 및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조사한 연구는 없음. 경기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 권리 증진 측면으로서의 조사가 필요함. 국가의 놀이 정책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확산되고, 아동 놀이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부처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놀이위원회를 설치와 놀 권리 인식개선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함.

목 차

1. 들어가며	1
2. 아동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3
가. 아동 여가시간	3
나. 아동 놀이공간	6
다. 아동 놀이형태	7
3. 아동 놀이지원 정책 현황	9
가. 중앙 및 지방정부 아동 놀이지원 정책	9
나. 아동 놀 권리 관련 정책사업 및 조례 추진현황	11
4. 시사점 및 경기도 향후과제	13

1. 들어가며

“한국 아동의 행복감은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 참여한 35개국 중 31위이며, 경기도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지수는 17개 시도 중 10위로 낮은 수준”

-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이며, 아동의 놀 권리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알맞은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임.
 - 아동은 놀이를 통해 현재 또는 미래 성인이기도 한 기술과 능력을 자유롭게 편하게 연습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됨. Vygotsky(1978)는 놀이를 사회적 협력의 산물로서 인식하여 놀이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 간 규칙의 설정과 역할의 설정 등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조절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 이라고 보았음(성은모, 강경균, 2018 재인용)¹⁾.
- 우리나라를 포함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영국 등 35개국 아동 약 1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에 의하면, 한국의 아동(만10세 기준)의 행복감은 31위로 나타남. 한국 아동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8.41점이며, 행복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알바니아(9.71점), 루마니아(9.48점), 그리스(9.35점), 몰타(9.23점)이며,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네팔(8.21), 홍콩(8.09), 베트남(7.90) 세 곳임(이봉주, 2021)²⁾.
 -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이 연구에서 제공하는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CWBI)는 아동의 관점에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아동지표를 제공하며, 한국 아동 삶의 질과 권리 수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경기도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CWBI)는 17개 시도 중 10위에 해당하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경기도는 2012년 9위, 2013년 7위, 2015년 9위, 2017년 7위에서

1) 성은모, 강경균(2018). 한국의 아동, 청소년 놀이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탐색. 청소년복지연구. 20(1), 35-65.

2) 이봉주(2021). 포용적 아동 삶의 질: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현황. 35개국 비교를 통해 본 아시아 속의 한국 아동의 삶의 질. 2021 한국 아동의 삶의 질 국제 심포지엄 발표자료 재인용.

2019년 10위로 나타남. 특히 주관적 행복감과 아동과의 관계와 관련한 지표 순위는 10위로 낮은 수준임.

<표 1> 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비교: 17개 시도 비교

(단위: 점수, 순위)

	지역	종합 지수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 환경	비좁은 인성
1	서울	113.88	1	5	6	1	2	1	4	5
2	부산	110.91	2	1	1	9	13	5	5	1
3	대전	110.76	7	3	2	5	4	2	11	3
4	인천	109.60	5	2	3	2	1	7	16	4
5	광주	109.60	12	8	5	4	5	3	3	2
6	서울	107.11	8	7	4	3	7	4	9	6
7	울산	104.86	3	4	9	8	3	8	1	14
8	대구	102.96	4	9	13	7	8	9	2	7
9	제주	100.39	9	6	8	16	6	11	6	10
10	경기	99.89	6	10	10	6	9	6	14	11
11	경남	97.04	10	11	7	11	16	12	15	8
12	전북	94.27	13	14	11	13	15	10	8	9
13	경북	91.54	14	16	14	14	10	13	7	13
14	강원	91.26	11	15	16	10	11	16	10	15
15	충북	90.42	15	13	12	12	14	14	17	12
16	충남	88.20	16	12	15	15	12	17	12	16
17	전남	77.78	17	17	17	17	17	15	13	17

자료: 유조안 유민상(2021). 지표를 통해 본 한국아동 삶의 질과 행복 변화. 한국아동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본 지난 10년 간 아동 삶의 질과 행복 변화 심포지엄」 발표자료. 재인용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9월 한국정부의 제 5·6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경쟁적 입시위주교육 개선과 휴식과 놀이시간과 시설 보장에 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음(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 대한민국은 제 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결과를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를 2024년 1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함.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가야할 책무를 가지고 중장기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함.
- 한국아동의 시간사용과 아동과의 관계 만족도의 낮은 수준은 아동의 놀 권리에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한국의 아동들은 과도한 학습 부담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쟁 환경 속에 자라나고 있음.

- 우리나라 아동의 놀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추진 기반이 확대·강화되고 있음. 이에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현황과 실태, 놀이 정책 추진 기반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아동 놀 권리 현황 및 실태

- 우리나라 아동 놀 권리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 실태조사는 없기 때문에 아동 종합실태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및 생활조사, 경기도 사회조사에서 보고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음. 이에 관련 조사내용 중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31조에 근거하여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함.

가. 아동 여가시간

-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은 70.2%이며,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10대 아동은 2019년 53.6%로 나타남.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 시간부족을 느끼는 아동은 63.8%로 2019년에 비해 10.2%p 낮아진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의 아동은 여전히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음. 시간 부족을 느끼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 권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2> 아동의 시간부족(압력) 정도

(단위: %)

	아동종합실태조사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8	2014	2019	차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낌	16.9	22.2	19.5	-2.7
가끔 부족하다고 느낌	53.3	41.6	34.1	-7.5
약간 여유 있다고 느낌	27.0	28.4	36.2	7.8
항상 여유 있다고 느낌	2.9	7.8	10.2	2.4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9-17세) 및 통계청(2015/2020) 「2014/2019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보고서」(10-19세).

- 아동이 시간부족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주로 학교, 친구관계 및 학교 밖 활동, 학원 또는 과외수업, 자기학습 순으로 나타남. 특히 학업과 관련한 이유(학교, 자기학습, 학원 또는 과외수업)로 시간부족을 느끼고 있는 점과 연령이 높을수록 친구관계나 학교 밖 활동 응답 비중이 낮은 점은 과도한 학습 부담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음.

<표 3> 아동의 시간부족(압력) 이유

(단위: %)

	계	학교	자기학습	학원 또는 과외수업	집안일 돕기	친구관계 및 학교 밖 활동	이동시간	기타
9-11세	100.0	22.4	12.6	22.9	1.3	38.0	1.1	1.5
12-17세	100.0	29.2	21.9	23.4	0.8	23.3	0.6	0.8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 바쁨과 시간 부족에 대해 42.4%가 항상 그렇다는 응답을, 주말에는 24.5%가 항상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표 4> 경기도 아동(15-19세)의 평일 및 주말의 바쁨 정도 및 시간 부족

(단위: %)

	계	항상 그렇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일	100.0	42.4	38.2	15.3	4.1
주말	100.0	24.5	41.2	27.1	7.1

자료: 경기도(2019). 「경기도 사회조사」.

- 경기도 아동(15-19세)의 34.6%는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46.9%는 보통 정도, 불만족은 18.6%임(2019년 기준). 2015년 이후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경기도 전체 아동의 30%가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나 수치가 상승했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함. 아동이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큼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활동에 만족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함.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아동들의 활동 형태가 놀 권리의 관점에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함.

<표 5> 경기도 아동(15-19세)의 여가생활 만족도(2015-2019)

(단위: %)

구분	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5	100.0	7.0	18.6	51.0	19.8	3.6
2017	100.0	7.2	23.4	48.3	17.5	3.6
2019	100.0	9.2	25.4	46.9	15.3	3.3

자료: 경기도(각 년도), 「경기도 사회조사」, 각 년도 말 기준.

- 경기도 아동(15-19세)이 여가활용에 대해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부족(58.5%)인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경기도 아동의 경우 여가생활에 있어 시간 부족에 대한 불만족 경향이 높음.
 - 경기도 아동이 여가활용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 시간부족을 꼽은 응답 비중은 2015년 55.6%, 2017년 57.5%, 2019년 58.8%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6> 아동의 여가 활용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

	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음	적당한 취미 없음	여가 시설 부족	여가를 함께할 사람 없음	여가 프로그램 부족	여가 정보 등 부족	교통 혼잡 및 불편	기타
전국	100.0	22.4	38.6	1.6	9.7	7.9	1.1	1.8	0.6	1.1	15.2
경기도	100.0	20.2	58.8	0.9	6.8	8.1	0.3	-	2.7	1.8	0.3

자료: 통계청(2021), 「통계청 사회조사」 (3-19세 아동) 및 경기도(2019), 「경기도 사회조사」 (15-19세).

-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ISCWeB)의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대인관계 만족도’ 순위는 35개국 중 14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31위였음. 한국 사회의 경쟁적인 교육제도로 인해 아동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음(이봉주 외, 2021).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것처럼 여전히 경쟁위주의 교육환경, 과도한 학습시간 등으로 인해 아동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아동 놀이공간

-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놀이공간은 필수적임. 그러나 조숙인 (2018)³⁾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아동이 놀이공간을 제한적이며 대도시에서 연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사회 놀이시설은 아파트/주택 놀이터(89.0%), 사설 키즈카페(86.7%)로 나타남. 연평균 놀이시설 이용 빈도에 있어 아파트 단지 내/주택 주변 놀이터는 107회, 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놀이터 91.1회로 높게 나타났으나 놀이시설 만족도는 다른 지역사회 놀이시설에 비교해볼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접근이 쉽고, 안전하며,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놀이공간을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해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국가 아동놀이 정책 수립 및 이행 제안서’에 아동이 모든 곳에서 놀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명시하여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공간 확보의 당위성을 제공함.
-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놀이환경과 관련해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5년부터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 프로젝트는 도시 놀이터 개선사업, 농어촌 아동지원사업, 초등학교 놀이환경 개선사업, 어린이 옹호활동가 캠프, 아동 놀 권리 정책개선 활동을 진행함.
 - 프로젝트의 특징은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아동-지역사회-지자체의 참여,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하는데 있으며, 이 캠페인에서 추진한 놀이공간 정책개선 활동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표 7> 아동 놀이공간 관련 정책개선 활동 사례

놀이공간 관련 정책 문제점	개선 활동	활동 결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 건설 시 놀이터 의무설치 예외조항 신설	입법반대 의견서 국토교통부에 제출, 150세대 주택단지 내 놀이터 의무설치 유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기구 중심의 놀이시설 관련 법령	놀이기구 중심이 아닌 공간, 주변 환경까지 관리하는 방식으로의 법령개정 작업 노력	적용대상 장소 확대, 어린이놀이시설 행위제한 항목 추가에 관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자료: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 프로젝트(<https://www.sc.or.kr/play/Intro.do>)

3) 조숙인(2018).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환경 조성방향. 육아정책포럼.

- 첫째, 2015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는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놀이터를 설치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토교통부에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정책개선 활동을 실시함. 그 결과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정안에 예외규정을 제외시킬 것이고, 향후 아동의 놀 권리 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란 공식답변을 받음.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 건설 시 놀이터 의무설치 규정을 지켜낸 정책개선 활동 사례임.
- 둘째, 세이브더칠드런은 안전한 놀이공간으로의 놀이터를 지키기 위한 법령개정 작업에 노력하고 있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기구 중심의 놀이시설 관련 법령이기 때문에 놀이공간, 주변환경의 안전까지 관리하는 방식까지 고려하는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진흥원 등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의 적용대상 장소가 확대되었고, 어린이 놀이시설에서의 음주, 흡연, 쓰레기 투기 등이 제한되는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둠.

다. 아동 놀이형태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19세 아동의 여가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가장 많았고(주중 87.9%, 주말 83.5%),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68.3%, 66.7%) 휴식활동(주중 60.0%, 주말 60.2%) 등의 순으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아동들이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관광활동(49.5%), 동영상 콘텐츠 시청(43.9%), 취미·자기개발 활동(39.2%)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다 활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8> 13-19세 아동의 여가 활용(복수응답)

(단위: %)

	동영상 콘텐츠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경기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등	취미·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활동	기타
주중	87.9	8.4	8.3	2.9	11.8	1.1	68.3	26.8	60.0	2.1	0.0
주말	83.5	10.9	7.0	2.8	12.2	5.0	66.7	25.4	60.2	5.4	0.0
향후	43.9	35.7	15.6	15.2	22.6	49.5	36.3	39.2	27.4	5.5	0.0

자료: 통계청(2021). 「통계청 사회조사」.

-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평일에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활동은 학원이 61.0%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식사 및 간식(45.7%), 집에서 혼자 공부(44.3%), TV/동영상 보는 시간(43.7%) 순으로 나타남. 주말 동안 3시간 이상 사용하는 활동으로는 TV/동영상 시청이 58.6%로 가장 많으며, 집에서 혼자 공부(32.1%), 집 밖에서 친구와 놀거나 보내는 시간(28.0%), 게임하는 시간(2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9> 만9-17세 아동의 평일 및 주말의 주요 활동 시간

(단위: %)

	계	평일				주말			
		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없음	1시간 미만	1-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없음
학교에 있는 시간	100.0	0.3	0.0	99.7	0.0	91.8	1.9	6.3	0.0
근로(아르바이트 등)하는 시간	100.0	65.8	0.4	0.3	33.5	65.9	0.4	0.2	33.5
학원 혹은 과외시간	100.0	16.0	23.0	61.0	0.0	75.6	12.8	10.6	0.0
이동시간	100.0	20.8	52.8	26.4	0.0	47.1	47.7	5.2	0.0
식사 및 간식(집, 외식포함)	100.0	6.3	47.9	45.7	0.0	8.8	66.7	24.5	0.0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100.0	9.9	45.8	44.3	0.0	15.6	52.3	32.1	0.0
TV/동영상 보는 시간	100.0	11.3	44.9	43.7	0.0	6.3	35.0	58.6	0.0
게임하는 시간	100.0	31.9	40.2	27.9	0.0	20.1	52.4	27.4	0.0
집밖에서 친구와 놀거나 보내는 시간	100.0	30.2	37.8	32.0	0.0	14.6	57.4	28.0	0.0
집안일 돕기	100.0	78.4	18.0	3.5	0.0	77.2	20.4	2.4	0.0
봉사활동, 동아리 등 주요 활동시간	-	-	-	-	-	90.5	8.9	0.6	0.0
취미 및 여가활동	-	-	-	-	-	50.4	40.8	8.7	0.0
신문·독서 하는 시간	-	-	-	-	-	64.4	32.5	3.1	0.0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주: 평일(만9-17세 아동), 주말(만12-17세 아동)

- 13-19세 아동이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은 주중에 친구(39.8%), 혼자(34.0%), 가족(25.2%) 등의 순이고, 주말에는 가족(40.4%), 친구(35.5%), 혼자서(22.9%) 등의 순임. 전체의 약 30%정도의 아동들이 혼자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0> 13-19세 아동이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단위: %)

	계	가족	친구 (연인포함)	동호회 (종교단체 등 포함)	혼자서	직장동료	기타
주중	100.0	25.2	39.8	0.4	34.0	0.3	0.3
주말	100.0	40.4	35.5	0.9	22.9	0.3	-

자료: 통계청(2021). 「통계청 사회조사」.

- 2019 경기도 사회조사에 따르면, 주말이나 휴일에 15-19세 아동들은 컴퓨터 및 인터넷 검색(57.7%), 문화예술 관람(32.3%), TV 시청(27.3%), 휴식활동(25.6%)과 같이 정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비중이 높았던 반면, 스포츠 활동(2.6%), 관광활동(2.2%)과 같은 동적인 활동의 비중은 낮음.

<표 11> 경기도 15-19세 아동의 주말 및 휴일 여가 활용(복수응답)

(단위: %)

	TV시청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 자기 개발 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 활동	기타
주말 휴일	27.3	32.3	2.2	2.6	9.9	2.2	57.7	10.7	25.6	6.0	3.4

자료: 경기도(2019). 「경기도 사회조사」.

3. 아동 놀이지원 정책 현황

가. 중앙 및 지방정부 아동 놀이지원 정책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은 중앙 부처별 고유기능에 따른 아동 관련 사업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산발적, 파편적 논의에 머물러 있는 아동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음(박세경, 2018)⁴. 정책비전은 아동의 발달주기를 고려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 놀이정책 및 문화여가 기반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놀이의 가치와 태도에 대한 변화, 놀이 시간 확보 및 쉽게 접근 가능한 놀이공간 제공, 연령에 적합한 놀이 개발 및 보급, 놀이 지도자 양성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이후 보건복지부는 놀이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아동 놀이 현장 제정 및 놀이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였음.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시도교육감 협의회, 어린이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됨. 추진단은 아동기 놀이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하고, 놀이 시간 및 놀이공간 확

4) 박세경(2018).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추진의 과제. 보건복지포럼(2018. 4.)

보를 위해 학교, 도심, 관공서 내 어느 장소에서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에 합의 함.

○ 2019년 5월 23일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천명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추진방향을 마련함.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4대 전략, 16대 과제, 40개 소과제로 구성됨.

- 포용국가 아동정책 중 놀이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아동이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불안에 비해 놀이 및 사회적 관계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점, 놀이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음.
-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을 놀이정책 전략으로 삼아, 지역사회놀이 혁신 추진 전략, 지역사회 주도의 놀이혁신 확산, 다양한 놀이 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로의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단체에서 추진 중인 놀이 관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 환경을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의 지역사회 중심의 놀이 혁신 확산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 또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놀이혁신위원회 설치하였음.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은 포용국가 아동정책 비전을 계승하여 동일한 비전을 설정하고,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놀이와 학습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과제를 설정함.

- 아동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체/문화/지식탐구 관련 시설 등을 이용할 시 할인혜택을 부여 하는 제도 도입(가칭 아동우대제도), 놀이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중심의 놀이혁신행동계획 수립 등을 통해 놀이 확산을 유도하고, 학교에서는 놀이/활동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공간, 시간 확보 및 놀이연계 학습 등을 지원함.

○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토대로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음. 비전은 「아이들이 더 행복한 신나는 경기도」이며, 아동의 행복권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음. 아동의 놀 권리 고취를

위해 놀이 문화 확산 사업, 어린이 놀이 축제, 경기도 놀이 환경 개선 등의 과제를 설정함.

나. 아동 놀 권리 지원 정책사업 및 조례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놀이혁신 선도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함. 1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고,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다양한 놀이 관련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모형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국비 1억 원씩을 지원함.

<표 12> 2020년 놀이혁신 선도지역 놀이 활동 사업

선도지역	놀이 활동 사업주제	선도지역	놀이 활동 사업주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말 책 놀이터, 종로 '북' 랜드	경기도 안산시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는 은평, 크는 아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 아이 '제대로' 만끽(놀이) 프로젝트
부산광역시 동구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동구를 위한 놀이 활동 지원 서비스 '이바구 놀이터'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기반 마을놀이지원 서비스 '톡톡톡 포래숲'
전라북도 전주시	야호 전주 다함께 놀자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손수, 순수 놀이 프로젝트(놀이탐험, 푹푹푹 노리페스티벌, 맘껏 놀자
인천광역시 동구	필이 통하는 놀이혁신으로 아동의 행복 찾기	충청남도 홍성군	놀이 문화 혁신 사업 'I 신나 YOU'

자료: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 프로젝트(<https://www.sc.or.kr/play/Intro.do>)

- 놀이혁신 선도지역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징과 주민들의 수요에 적절한 놀이를 활성화 하고, 선도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놀이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놀이혁신 사업을 확대를 통해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음. 총 1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놀이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음.
- 안산시는 '안산형 놀이문화 조성 프로젝트' 라는 활동주제를 제시하고,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전 지구적 문제 및 마을 문제를 주제로(ex. 재난, 안전, 기후, 다문화, 기술)로 6개 마을·기관과 6개 학교와 연계된 형태로 야외 팝업놀이를 진행함. 안산지역에서 양성된 놀이 활동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며,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임.

- 시흥시는 '시흥아이 제대로 판짓(놀이) 프로젝트'라는 활동주제로 실내외 놀이아지트 공간 마련, 놀이터 모험 여행, 놀이디자인 캠프, 판짓거리(놀이상자)와 어른(부모)과 함께 어린 시절 회상 놀이, 다른 아이의 부모가 되어 놀아보기, 부모교육, 지역사회 아무놀이(팝업놀이터 및 마을 축제 등)를 진행함. 시흥시청 아동보육과, 지역사회 놀이단체(가치놀이연구소, 얼썬 놀자, 플레이스타터, 한밭두발협도조합)와 협업해 놀이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고, 시흥만의 놀이모델을 개발하였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예비부모,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놀 권리 인식개선 교육과 아동의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별 놀이 활동가 양성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건강한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또한 부모, 교사, 교육청 공무원, 놀이 활동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심포지엄을 개최함.

- 특히 재단 내 놀이 활동가 양성교육은 건전한 놀이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하고자 다함께돌봄센터와 동네 놀이터 등에 놀이 전문가를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놀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개선과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있음.

○ 경기도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2019년 6월에, 경기도 교육청은 2020년 1월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였음.

- 경기도와 교육청 조례에 공통적으로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놀이 활동 실태 조사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경기도 조례에는 경기도는 놀 권리 증진 사업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과 포상에 관한 내용(제8, 9조)포함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 조례는 놀 권리 보장 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6, 7조)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이 두 조례의 차이점임.
- 경기도 교육청은 놀 권리 보장 조례제정 이후 '초등 놀이교육 활성화 정책' 내용을 교육과정 에 포함시켰으며, 놀이활동 지원 사이트('경기 함께 놀자')를 구축하여 학년군 별 일일선택

활동, 가족 놀이활동, 학생 스스로 놀기, 나만의 요리활동 등 600여 편의 주제를 만들어 활동하는 사업을 추진함.

4. 시사점 및 경기도 향후과제

“경기도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놀이위원회 구성, 놀 권리 인식개선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요구에 기반 한 놀이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여러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아동은 높은 학습시간에 비해 놀이 시간은 매우 부족하며, 놀이할 수 있는 공간과 놀이형태는 제한적이며 다양하지 못한 실정임. 아동들은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와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자율성과 자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약 5년간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하고,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함. 우리나라의 아동 놀이 정책은 아동 복지측면으로서의 정책 범위와 영역을 파악하고,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 중앙정부는 놀 권리 정책수립과 더불어 놀이혁신 선도지역, 지역사회 중심의 놀이 혁신 확산(놀이혁신 위원회, 놀이터를 지켜라)등의 정책 사업을 아동권리 보장 단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음. 경기도 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전문가 양성, 심포지움 개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지역단위의 아동 놀이 환경 실태와 인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하나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조사한 연구는 없음. 앞서 아동의 놀 권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종합실태 조사와 통계청 사회조사 및 생활시간 조사, 경기도 사회조사 결과를 분절적으로 참고하였고, 이 조사결과로는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실태와 그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경기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 권리 증진 측면으로서의

조사가 필요함.

- 아동 놀이정책은 아동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기에 여러 관계부처 간 정책 영역이 중첩되어 정책대상과 사업내용의 중복문제 등 다양한 이견을 보이기도 함. 따라서 경기도의 놀이 정책이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확산되고, 아동 놀이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놀이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아동 놀 권리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놀이정책 기본계획 및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함. 계획수립 이전 놀이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과 함께 아동참여위원회를 통해 아동의 의견수렴도 함께 동반되어야 함.
- 우리사회는 놀이 자체에 가치를 두기 보다는 학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휴식정도의 의미로 가볍게 여기거나, 건강 증진을 위한 도구 등과 같이 놀이를 도구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김명순, 2018)⁵⁾. 국가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놀이를 장려하고 확산하려는 정책지원을 확대하더라도 부모들의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임. 따라서 부모 및 예비 부모 등을 대상으로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함.

5) 김명순(2018).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9권, 57-75.